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80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2202649)	2024.08.0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11.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조승환의원 (2208923)	2025.03.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7. 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11.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김성원의원 (2210603)	2025.05.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11.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양부남의원 (2213177)	2025.09.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11.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 등을”을 각각 “구성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p> <p>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p> <p>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u>조성 등을</u>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p> <p>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u>조성 등을</u>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p> <p><신 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생 략)</p> <p>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1. <u>제24조제1항제1호</u>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p> <p>2. <u>제24조제1항제2호</u>의 용도로</p>	<p>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p> <p>① ----- -----.</p> <p>1. ----- ----<u>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u>-----</p> <p>2. ----- ---<u>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u>-----</p> <p>3. <u>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u> ----- -----</p> <p>2. <u>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p>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 ④ (생략)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
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
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략)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
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략)

② ~ ④ (생략)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

-----.

1. -----

가.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 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